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24 선고 2024가단529435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인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24. 10. 24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19. 7. 22. 체결한 상속재산
협의분할은 4,053,90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4,053,9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 :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김홍도

별지